

# 예 산 총 칙

2005 년도 [0 본예산]

\* 제1조 : 2005 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586,590,000	17,597,700
일 반 회 계	509,300,000	15,279,000
특 별 회 계	77,290,000	2,318,7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350,000	220,500
주택사업특별회계	2,670,000	80,1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020,000	270,6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50,000	40,5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60,000	79,8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40,000	82,200
치수사업특별회계	880,000	26,4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	1,400,000	42,0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630,000	18,9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420,000	492,600
청소사업특별회계	32,170,000	965,1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42,520,000천원

제3조 200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98,694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